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 한·미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중심 -

이 만 중**

차 례

- I. 서 론
- II.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특징
- III. 현행법제상 관련법규 및 주요쟁점
- IV. 반환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대처 방안
- V. 결 론

I. 서 론

최근 충남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로 인한 기름유출 오염사고와 관련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05년부터 본격 반환되고 있는 주한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 역시 새로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주둔 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자세한 환경 조사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7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연합 토지 관리계획(CPP)¹⁾에 따라 2011년까지 59개 기지가 반환될 예정으로 이중 2007

* 본 논문은 2008년도 호원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1) 용산 기지 이전 협정안과 연합 토지관리 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 협정안이 2004년 12월 9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과하였다. 과거 50년이상 미군 공여지로 사용된 수천만평에 달하는 토지가 반환된다는 점에서 찬성과 용산 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부담에

년까지 23개 기지의 반환이 완료되었다.

근 반세기동안 미군이 자기 땅처럼 사용하던 기지를 한국이 반환받았으니 이제라도 반가운 일이 아니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각종기름과 쓰레기 포탄찌꺼기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미군 기지를 반환 받아야만 하는 것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대단히 우려할 문제이다.

더구나 SOFA 환경규정(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따르면 미군 기지는 반환 전 환경오염절차 및 치유절차를 실시하고 한·미간 양국 협의에 따라 정화하고 이후 모니터링(공동검증)을 거친 후에야 기지를 반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의 정화와 치유의 책임은 '오염자부담원칙'으로 오염을 일으킨 자가 치유의 책임을 지는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미군측의 입장에 뚜렷한 반론도 없이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있는 현실이다.

특히 이들 반환 기지에 대한 향후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은 엄청나며, 결국은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실정이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군 반환기지 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군이 야기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환경관련 법규 적용여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대의 움직임도 있었다. 여기서 연합 토지관리계획(LPP)은 미군기지 통제합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기지재배치에 관한 협정이다. 2002년 용산의 아리랑 택시 부지(2002년), 평택 베타 사우스 (2003년)가 반환된 후, 2004년 미군의 전략 변화에 따라 수정 되었다. LPP에 따르면, 34개 미군기지와 4966만평의 훈련장을 한국에 반환하게 되었다. 공군과 해군중심으로 전력이 강화되는 미군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대신 평택과 대구에 362만평을 새로 제공 받는다.(<http://www.Greenkorea.org>)

- 2) 환경부는 2006년 6월까지 조사된 29개 기지의 환경 오염정화 비용으로 279억~128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하수 오염의 정화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합한다면 59개 전체 기지의 정화비용으로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5년 7월 개정 환경법에서 추가된 '가급'치유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가급'보다 낮은 '나급'수준으로 치유 할 경우에는 3천억~4천억원의 4분의 1정도로 줄여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지역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 하천, 공원, 학교용지들을 말하며, '나'지역은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잡종지등으로 지목이 분류된 곳을 의미한다.(<http://www.me.go.kr/>)

대한 법적 구제방법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³⁾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관련 환경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반환 될 미군 기지의 반환 방식에 대하여도 지금과 같은 불공정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나은 오염정화 조치를 미국 측에 요구할 것 인지 등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들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II.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특징

1.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반환 미군 기지의 오염 정도는 지금까지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던 당시의 오염 사고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⁴⁾ 오염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사고의 대부분을 노후 된 유류 저장고와 송유관 관리소홀로 인한 기름 유출이었다. 특히 환경부의 국회보고를 통해(2006.7.24), 알려진 29개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오염정도는 지금까지의 우려를 현실로 확인 시켜주었는데 석유계층 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100배이상 초과했고, BTEX가 14배, 납이 102배, 아연·카드뮴·구리가 기준치를 2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수질 오염도 심각해서 TPH·벤젠·페놀 등이 먹는 물 기준치의 100배, 테트라 클로에

3)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http://search.naver.go.kr>)

4)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언론검색, 현장조사, 현장 체보 등을 통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90년 이후 전국의 100여개가 되는 미군기지과 시설에서 모두 6건의 오염사고가 발견되었고 이중 77%가 기름유출이었다. 환경부가 작성하여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기지 정화 비용만해도 대략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http://www.Greenkorea.org>)

틸렌(PCE)이 2.7배, 벤젠의 농도는 39배였다. 이들 물질은 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결국 반환 예정 미군기지 모두가 토양 환경 보전법 기준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수많은 오염사고 때문에 많은 기지를 반환받고 새로운 땅을 공여하는 것에 대해 결국 '헌 땅을 받고 새 땅을 준다'는 우려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표 1〉 2007년 추가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도⁵⁾

구분	기지명	면적 (만평)	토양오염 조사결과			지하수오염 조사결과		
			오염량 (m ³)	오염농도 (mg/kg)	오염 기준	기름두께 (Cm)	오염농도 (mg/l)	오염 기준
1	의정부 시어즈	2.9	79,875	(TPH) 36,781 (BTEX) 193 (납) 424 (아연) 613	500 80 100 300	90	(TPH) 96.9 (벤젠) 0.047 (크실렌) 1.092 (페놀) 0.115	1.5 0.015 0.75 0.005
2	의정부 에세이온	6.3	72,580	(TPH) 32,713 (BTEX) 713	500 80	78	(TPH) 1.298 (벤젠) 0.238 (크실렌) 1.945	1.5 0.015 0.75
3	의정부 폴링워터	1.5	16,448	(TPH) 16,427 (BTEX) 170 (아연) 964 (니켈) 255 (납) 288 (구리) 1,069	500 80 300 40 100 50	13	(TPH) 37.4	1.5
4	파주 에드워드	7.5	58,787	(TPH) 12,108 (구리) 1,824	500 300	240	(TPH) 8.96 (페놀) 0.523	1.5 0.005
5	춘천 페이지	19.3	53,525	(TPH) 50,552 (BTEX) 1,152	500 80	100	(TPH) 708.9 (벤젠) 0.595 (크실렌) 1.549 (PCE) 0027	1.5 0.015 0.75 0.01

* 자료 :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제259회 국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발언자료, 2007.

5) 춘천 캠프 페이지 등 바이오슬러핑 방식으로 부유상 기름을 제거하기로 한 5개 기지의 경

2.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의 특징

주한미군 환경사고는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를 도와주고 있는 우방국과의 문제라는 점과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성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2000년 7월 발생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민들의 여론과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⁶⁾

따라서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사고도 점차 증가 하였는바 이는 새롭게 환경오염 사고가 증가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면서 지금까지는 무관심했던 사항들이 알려지고 발견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⁷⁾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를 보면 건축 폐기불법매립, 미군기지 주변 독성폐기물 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고등이 대표적이나 기름에 의한 오염사고가 전체 오염사고 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군기지로 가는 송유시설과 기지 내 주유 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소홀로 인한 토양오염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 앞서 반환 된 14개 기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오염정도가 심각하다. ‘바이오슬러핑’은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기술로, 땅속에 진공을 가해 지하수 상부의 부유기름을 추출하는 공법이다.

이들 5개 기지외에 나머지 기지의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해 미측은 이들 5개 기지만 바이오슬러핑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계약기간 6개월간 작업을 벌였고, 이 작업을 수행한 삼성물산측은 최근 바이오슬러핑 작업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바이오슬러핑을 통해 어느 정도 정화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2007년 2월 7일 용산미군기지 내 영안실에서 사체방부용으로 사용되던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당 475ml, 병 24개, 총 480병)가 한강으로 흘러들었다. 이치명적 오염물질은 영안소 부장 맥팔랜드의 명령에 의해 아무정화 없이 싱크대에 버려졌다. 이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여론이 생기고 SOFA에 환경조항이 신설된다.

7) 1990년대(1990~1999)에는 한해 평균 3.2건 정도의 환경오염사고가 2000년 이후에는 한해 평균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개선방향”참고, 녹색연합, 2005년 6월)

〈표 2〉 주한 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 사례

사고유형	내 용
파주 미군 부대 연료탱크 송유관 파손, 기름 유출 (2008. 8. 28)	주한 미군 2사단 공병여단(캠프하우스)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경유 2천여ℓ가 유출, 인근하천으로 흘러감
동두천 캠프케이저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1998. 2. 13)	미 2사단 산하 부대에서 7년간 수십만톤의 건축 폐기물을 산에 매립, 원상복구를 하지 않음
왕방천 수질 오염 (1997. 6)	경기도 동두천시 왕방천이 헬기정비를 통해 나오는 독성 폐기물, 헬기세척시 발생하는 세제류등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
원주 캠프 LONG 쓰레기 매립사건 (1996. 11)	원주 캠프 통기지에서 영내 야산을 깎아 부대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쌓아 두면서 침출수등을 방지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함
부산 하야리아 부대내 석면오염사건 (2000. 5. 28)	미군 당국이 96년부터 하야리아등 4개 기지의 석면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악화 시킴.
용산기지내 영안실 포르말린 한강방류사건 (2000. 7)	시체방부제를 사용하던 포르말린을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싱크대에 무단방류 한강유입

* 자료 : 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korea.org)

3. 해외주둔 미군기지 환경 정책

미군의 해외주둔 기지에 대한 환경정책은 1973년 닉슨대통령이 발한 대통령 훈령 제 11752호(E.O. 11752) 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 훈령 제3조는 “미군 영토 밖에서 연방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지휘관은 해당 시설이 접수국 또는 관련 관할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오염 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이후 1978년에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8) Heads of Federal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ederal facilit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shall assure that such facilities are operated so as to comply wit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standards of general applicability in the host country or jurisdiction concerned." Executive Order

훈령 12088호를 발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방기관은 접수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환경기준을 준수 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방부는 환경보호 기준 지침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회의 지적과 주문에 의하여 1991년 국방부 훈령 6050.16을 마련(1996년 국방부 지침 4715.5로 대체) 미군의 해외주둔 기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오염 기준을 제시 해외환경 기준 규정집(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OEBGD)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최종관리기준 (Final Governing Standards, FGS)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오염지역의 치유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와 맺은 SOFA조항과 해당국가와의 방위분담비율에 따른 상호관계등을 이용하여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정화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치유하고 나머지는 접수국에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환경오염 정화 정책에 있어서도 접수국과 체결한 개별 SOFA 규정이나 접수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해당국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4. 예정 반환 미군기지 현황

주한 미군기지 반환은 2002년 3월 29일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미군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 중에서 4100만평이 넘는 땅을 2011년까지 반환하겠다는 계획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환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는바, 첫 번째는 군사적 이유로 주한 미군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주둔기지를 감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이유로 미군의 주둔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합리적 주둔’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반환되는 땅은 미군들이 50여년간 특별한 통제 없이 사용한 관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치유에 대한 목소리

가 강하게 제기되었다.⁹⁾ 그러나 환경치유 비용은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미 양국간 책임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더구나 환경 오염 치유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는 SOFA규정상의 입법론적 해석차이로 인하여 환경 문제 해결 후, 지자체별로 활용 하도록 한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반환 미군기지 현황(2008년 이후)

반환년도	지역	기지명	매각면적 (평)	현 도시계획
2005년	과주	하우즈	18만1469	자연녹지 15%
		스텐톤	8만949	자연녹지 90%, 일반주거 10%
		에드워드	7만6176	자연녹지
		게리오웬	8만8420	자연녹지 20%, 생산녹지 80%
		자이안트	2만9135	자연녹지
	의정부	폴링워터	1만4952	상업지역 48%, 공원용지 52%
	부산	히아리아	14만9887	자연녹지 55%, 상업지역 25% 주거지역 20%
2006년	서울	그레이 에넥스	2685	상업지역 5%, 주거지역 95%
	의정부	라카디아	4만247	상업지역 70%, 주거지역 30%
		씨어즈	6만3276	자연녹지 95%, 주거지역 5%
	동두천	캐슬	6만7597	자연녹지
	대구	워커 (H-805)	1만7430	자연녹지 85%, 상업지역 15%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356만1290	자연녹지 95%, 주거지역 5%
	과주	캔사스 사격장	1만5967	자연녹지
		텍사스 사격장	16만4705	자연녹지
		오클라호마 훈련장	1만8500	자연녹지

9) 2008년 1월 10일 국방부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주시 캠프 에드워드와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 기지(2005년 반환)등 2곳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한 결과 두 곳의 전체면적 중 8~9% 가량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08년 6월까지 실시계획 설계가 끝나면 1년 6개월 ~2년정도 환경오염 치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건교신문. 2008. 1. 29)

2007년	하 남	콜번	7만6150	자연녹지(도시외지역)
2008년	서 울	킹	1만5563	자연녹지
	평 택	알파탄약고	8만9069	농림지역(도시외지역)
	동두천	H220	5만9559	자연녹지
	인 천	마켓	16만724	공원 60%, 주거지역 40%
	의정부	카일	4만3419	자연녹지 80%, 주거지역 20%
		에세이온	7만2712	공원 60%, 주거지역 20%
잭슨		52만1978	공원 30%, 개발제한구역 70%	
2011년	동두천	닙블	1만7660	주거지역
	의정부	레드 클라우드	21만1767	자연녹지
		스탠리	70만1448	자연녹지
	동두천	케이시	210만333	자연녹지 95%, 주거지역 5%
		호비	121만3971	자연녹지 40% (도시외지역)
		컨트레이닝 훈련장	38만8187	도시외지역 (농림지역)
		모빌 훈련장	1522	자연녹지
	파주	기갑 훈련장	4만3347	자연녹지

* 자료 : 국방부 반환미군 기지현황. 2008

III. 현행 법제상 관련 법규 및 주요쟁점

1. 한국 환경 법규의 적용 여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1950년 한국전쟁 시 유엔군 자격으로 주둔한 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상주하며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막는 전쟁역지력,

대응력으로서 역할을 하기위해 상주하고 있으며 그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행정협정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주한 미군은 원칙적으로는 접수국인 한국의 법률질서에 따라야 하며 다만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SOFA에 체결된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에 불과하다.

한미행정협정 제 7조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그 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는 환경관련 법규도 당연히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관하여 SOFA에 명시적인 포기규정이 없는 한 또한 SOFA 합의 의사록 제 3조 2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되어있어 국내 토양 환경 보전법등 환경법규가 적용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2. 미국 환경법규의 적용 여부

미국은 자국 내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환경법 체계와 환경관리 체도를 갖추고 있다. 더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환경안보’를 강조하면서 국방부 차관(환경안보)직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자국 내의 군사시설들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기도 했다.¹⁰⁾ 그러나 미국은 자국 내에서는 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해외에 주둔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국력이 약한 나라일수록 불평등한 입장에서 미국 자국법규와는 차이가나는 환경법규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 1991년 해외환경기준규정집(OEBGE)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식수기준, 폐수기준, 유해물질, 유해폐기물, 일반의료 폐기물 유류 등 화학제품 등에 대한 환경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내 자료의 국내 기준을 그대로 도입했다 기 보다는 오히려 해외주둔 미군기지에서 융통성을 허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적용한 실정이다.¹¹⁾

따라서 미국이 자국 내에서 아무리 좋은 법과 체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 주둔 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방적인 법규라면 그러한 법과 체도는 해외주둔 국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0) 홍성태,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과 문화정치”, 「공간과 사회」 제14호, 174면.

11) <http://www.GreenKorea.org>

3. SOFA 환경조항의 이해

SOFA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해외 주둔국과 체결되어 있으며, 주둔국의 성격이나 당사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SOFA는 '본문'과 협정의 세부 관련사항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주요 문서로 되어 있으며 3개문서는 총 31개조와 각조에 따른 수십 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타 양해 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한다. 아울러 2001년 1월 2차 개정시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추가 신설되었다.¹²⁾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가 체결되어 졌으나 (2003. 5) 오염조사 절차는 명시되어 있으나, 정화 비용부담 정화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¹³⁾

12) 미군의 한국 환경 법령 준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조항을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 규정(3조2항)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환경 조항 신설에 합의 하였다.

13) 미군기지와 관련된 오염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것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002)이고, 미군기지를 반환하거나 새롭게 공여할 때 환경오염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2003, 이하 부속서A)에 담겨있다. 부속서A는 반환 미군기지 에서 오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미군이 환경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규정된 한미 공동 오염조사 절차는 3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바 ① 한미 공동 오염 조사는 3단계로 먼저 1단계 (조사기간 : 30일)는 미군기지의 시설과 구역, 환경에 관한 자료를 미군이 한국 정부에 전달하며, 2단계 (조사기간 : 60일)는 현장에 접근하여 현장검사를 수행하고 오염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며, 3단계 (조사기간 : 15일)는 정보와 조사결과 보고서 교환을 하게 되어 있다. ② 오염 정화 단계는 발견된 오염은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③ 환경오염정화가 완료된 후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로 반환하게 되어 있으나 보통 미군은 이미 기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며, 폐쇄된 기지를 대상으로 오염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표 4〉 SOFA 환경 관련 조항

구분 항목	주요내용	비고
SOFA 3조 2항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법령준수가 아닌 존중(Respect)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환경오염 정보공유 및 부대출입허용, 모니터링, 후속조치, 평가, 언론보도 등에 관한 일반적 합의사항(환경오염사고 및 반환 공여예정 시설/구역에 대한 접근보장)	주한미군이 일으킨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3단계에 의한 환경조사 절차 및 치유협의 절차 명시	반환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측에 미측 비용으로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

* 자료 : 녹색연합 홈페이지(<http://www.greenkorea.org>)

4. 한·미간 환경 정화에 관한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SOFA 해석을 둘러싼 논쟁

주한 미군은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에 대하여 한미 SOFA협정 본문 제 4조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조항에 따라 기지 반환 시 미국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으며 한국도 미군이 남긴 잔존 가치물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¹⁴⁾ 이에 반해 한국 측은 SOFA 제 4조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발생시킨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미군이 필요에 의해 설치한 건

14) 동조에 의하면 “합중국 정부는 본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 할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물과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을 면제한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이를 근거로 ‘환경오염’에 대한 무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표 5〉 SOFA 규정을 해석하는 한미 간 입장 차이

SOFA 규정	한국	미국
SOFA 4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환경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며, 2000년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이 조항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해석

2) 반환기지 치유기준 차이

2006년 한·미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에서 미국이 오염을 치유해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던 미군기지 14곳이 미국 쪽 거부로 결국 오염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2007년 4월 13일 한국에 공식 반환되었다.¹⁵⁾ 그 결과 국제관례인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어기고 주한 미군이 부담해야 할 환경정화 비용을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기로 한 불평등한 합의를 하였다라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는 앞으로 반환될 나머지 기지들의 오염 치유에도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¹⁶⁾

여기에서 한·미간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기준이 다른 것은 우리 측은 첫째, SOFA 3조 2항 “(미)합중국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 법령 및 기준

15) 환경부는 2006년 미국이 지하 유류 저장탱크 제거등 8개 항목의 오염 치유 조치를 완료했다고 통보해온 기지 14곳에 대한 점검에나서, 10개 기지에 유독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 함유된 폐변압기가 방치된 등 치유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소파 환경분과 위원회를 통해 미국에 추가 오염치료를 요구했으나 미국쪽이 거부해, 환경분과 위원회는 검토보고서 합의에 실패 했다.(한겨레, 2007, 4, 14)

16) 정부가 요구한 2008년도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일반회계 예산은 2400억원 이었으나, 국회에서 1000원이 삭감되. 1400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비용은 당초보다 절반가량 삭감 되 32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치유의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환경법령인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둘째로는 양해 각서상 환경이행 조항에서 한·미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KISE)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 조치를 검토한다.”는 조항에 있어 미군은 KISE해석상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한국 측의 기준 (토양 환경 보전법 제 4조의 2)과는 상이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표 6〉 반환기지 치유기준에 대한 한-미측 주장

구분	한국	미국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미 국방부 훈령(1998.2.2); 해외활동군의 환경치유
내용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예) TPH : 500mg/kg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의 해석과 치유범위는 주둔군 사령관이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여 의무참모와 환경참모의 조언을 듣고 결심
해석	현재 오염된 상태는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잠재적인 오염원이므로 위험으로 해석	현재까지 미군 병사들의 건강에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위협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

* 자료 : 국방부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검토 보고서, 2005.11

3) 환경조사의 문제점

환경오염의 조사와 치유계획에 대한 수립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5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에 의하면 반환계획 날짜로부터 통상 12개월 이전에 조사를 시작하여 105일 동안 3단계에 걸친 환경 조사 절차와 조사 뒤 정보교환과 치유 관련 협의(30일간 공동 기초정보 교환 및 실사, 60일간 환경조사, 15일간 조사결과 검토)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환경 오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환경오염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오염된 기지 정화를 1년 안에 끝마친다면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한국에 반환 될 가능성이 많다.

IV.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대처 방안

1. 입법론적 조치

1) SOFA 및 관련 합의문 개정

주한 미군이 따르고 있는 환경규정은 크게 SOFA,미군자체규정, 한국법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SOFA관련규정이다. 그러나 기존 SOFA 및 관련 합의문에 있는 환경관련규정은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미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일례로 환경오염 치유 절차 합의서에도 환경치유가 미측에 의해서 계획되고 행하여 지도록 권고되어 있으며 오염 치유의 기준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군 당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정책(Policy)을 확인함에 그쳤다는 점에서 명백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정을 통해 미측에 실질적인 환경 치유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SOFA개정이 필요하다. 즉 ①환경오염 치유절차 합의서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의를 고려하여 치유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게 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동의 또는 승인등으로 고치는 것을 검토하고 ②정보공유 접근절차와 환경오염 치유절차 합의서에서 정보공개 시 미군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삭제 ③한국의 환경법이 미군기지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지반환 후에도 미군에 의해 오염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비용에 대하여 미국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아울러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문제에 대한 협의 및 사전통보 요청

권,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접근권, 환경오염 피해 조사권, 환경오염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권, 환경오염 규제 및 방지 요청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사후적 구제에 관한 규정의 보완

필리핀 등 외국에서도 미군이 주둔하다 철수한 기지에서는 반환된 이후 환경오염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¹⁷⁾ 이는 미군 주둔기지 대한 접근이 힘들고 반환 이전 조사기간이 짧아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미군 기지를 반환 받으면서 오염된 기지의 환경치유 기준으로 국내법을 적용 하지 못하고 미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오염 치유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것이다. 현행 한미SOFA 제 4조 1항에 의하면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 시 미군의 책임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하여야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규정이 복원 책임에 관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분규가 발생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확인하고,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도록 사후적 구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2. 정책론적 조치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 책임과 관련 하여서는 입법적 측면에서의 방안 강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

17) 1999년에 파나마 정부에 반환한 미군기지에서는 미군이 화학무기를 저장하였고, 독성제 초제 등 온갖 화학무기 실험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미군기지 환경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그 외에도 폐기물 매립, 기름오염, 지뢰 매설 등으로 반미 분위기가 고조 되어있다. 파나마 사례가 시사하는 것은 제대로 된 환경 정화 없이 미군 기지를 반환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국민에게 전가되고 추후 발견되는 오염 책임이나 증가하는 정화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 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반환 전 오염 조사 철저

2004년 한미협정을 맺은 LPP(Land Partnership Plan, 연합 토지 관리계획)에 따라서 2011년까지 59개 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아 실제 반환은 예상보다 미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반환 후 지자체들의 공여지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개발비용 증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간에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 각서와 부속 합의서에는 반환 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조사는 반환시점 12개월전에 시작하고 105일간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오염조사 기간이 짧아 충실한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는 결국 부실한 조사로 환경오염 치유가 덜된 상태에서 반환되고 정화비용을 한국정부,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환 전에 철저한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자정화원칙'에 따라 미군에게 정화책임을 묻는일이 필요하다.

2) 미군과의 지속적인 협의

한미 당국은 2006년 제 9차 한미 SPI(안보정책구상회의)회의를 통해 미측이 유류저장탱크,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을 치유했다고 통보한 1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 했다. 그 결과 국제적 관례인 '오염자부담원칙'까지도 어기고 주한 미군이 부담해야할 환경 정화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기로 하는 불평등한 합의를 하여 우리의 환경주권을 포기 하였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이는 앞으로 반환될 나머지 기지에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정화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주권과 환경정의 차원에서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국 측에 실질적인 환경치유 부담을 갖도록 협의 하여야 한다. 물론 미군과의 협의에는 양국 간의 치유수준과 방법 등에 있어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어려운 문제이나 환경문제로 인해 자칫 반미감정이 악화

될 수도 있고 한미동맹과 안보등 관계를 고려해 한국의 토양 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의 수용을 촉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미국법원에 제소

미국의 환경법은 「환경관리법」형으로 환경의 유지·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고 있어 오염의 철저한 정화와 그 비용 부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강화,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주의와 연대 책임주의 도입, 환경기준의 대폭적인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대표적 환경법인 슈퍼펀드법(포괄적 환경처리 보상책임법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CERCLA)에는¹⁸⁾ 정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첫째,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이 환경에 배출되거나 배출 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오염 물질이 공공의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환경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유해 물질이 토양에 노출된 경우 정도에 상관없이 정화 대상이 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규집행에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시민소송(Citizen's Suit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모든 시민은 법규를 위반한자나 법규상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나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 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국 환경법상의 관련규정에 입각하여 미국법원에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해 볼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 관하여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관련조항들이 우선적

18) 이 법률을 슈퍼펀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방정부 스스로가 거액의 자금(슈퍼펀드)을 보유하고, 오염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나 오염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하여 오염시설을 정화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 기금은 석유세, 화학품세, 환경법인 소득세, 일반재원등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으며, 미국사상 드물게 보는 오염사고로 알려진 「러브 캐널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80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19) 이재욱,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공군법률논집」, 제5집, 2001.

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개인피해자가 미국 법원에 국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 구제 절차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2007년 미국은 환경정화와 검증 없이 매향리 폭격장을 포함한 23개 미군기지를 반환하였다.²⁰⁾ 그러나 이는 2001년 SOFA개정 당시 미군 반환기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환경오염을 치유하여 반환 할 것이라 장담하였으나 주한 미군은 SOFA 제 4조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법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를 외면하고 반환절차를 진행 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화와 검증 없는 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철회하라'는 시민 사회단체의 끊임없는 요구등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와 정화문제는 이제 한국사회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간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고 있는 SOFA 환경관련조항을 개정 보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SOFA개선점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SOFA해석이 제 각각이며 SOFA의 구체적인 현실 운용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양측사이에 조사 방법 등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이 필요 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측이 자신이 야기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복원책임을 지는 것은 '오염유발자책임원칙'이라는 환경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한미 SOFA협정 본문에 한국의 환경법이 미군기지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 하고 사후적으로 기지반환을 하는 시점에도 미군이 야기한 것으로 발견되는 환경

20) 국방부는 2008년 1월 16일 '매향리 폭격장'을 반환 받은지 6개월 만에 환경오염 조사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공개한 결과 환경조사가 제대로 않되 많은 미비점이 나타났다. 토양오염량은 납이 3천445mg/kg로 기준치(100mg/kg)의 34배, TPH(총석유계 탄화수소)는 2천377mg/kg로 기준치(500mg/kg)의 4배, 아연 783mg/kg로 기준치(300mg/kg)의 2배로 나타났다.

오염에 대해서는 미국이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오염에 대한 한미 협의 결과 양국의 기준이 상이하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측이 주장하는 치유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치유하여야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한미동맹과 안보역시 중요한 사항이지만 자칫 반미감정을 확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개정된 협정을 통해 미측에 실질적인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형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65집 353면, 1994.
- 김홍균,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환경법연구」, 제 24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2.
- 남화선, “군부대가 무서운 민통선 사람들”, 「함께 사는 길」 1월호, 2002.
- 문진미, “주한미군, 왜 이러나”, 「함께 사는 길」 12월호, 2001.
- 박항주, “미군의 매향리 폭격을 지원하는 국방부”, 「함께 사는 길」 7월호, 2000.
- 박현철, “미군 사격장 아래 과주 취숙장”, 「함께 사는 길」 9월호, 2000.
- 성낙진,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는 분단의 현장”, 「환경운동」 2월호, 1994.
- 손기용, “환경안보라는 군의 새로운 과제”, 「한국환경보고서 2000」, 녹색연합, 2005.
- 여영학,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함께 사는 길」 7월호, 2000.
- 오두희, “아직 끝나지 않은 SOFA개정 운동”, 「노근리에서 매향리까지 - 주한미군 문제해결운동사」, 깊은 자유, 2001.
- 이상백, “폭격은 이제 그만”, 「함께 사는 길」 9월호, 2001.
- 이시재, “매향리를 반패권주의 블록의 전초기지로”, 「함께 사는 길」 7월호, 2000
- 이재욱,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공군법률논집」 5집, 2001.
-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한미협정개정을 촉구 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1999.
- _____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 이현철, “미군 프롬알데히드 한강 방류사건”, 「함께 사는 길」 9월호, 2000.
- 채영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 - 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 23권 2호, 2001.
- 최승환,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 홍성태,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과 문화정치 -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공간과 사회」 제14호, 2000.
- _____ , “미국은 왜 전쟁을 필요로 하는가”, 「황해문화」 봄호, 2002.

_____, “전쟁국가 미국과 정보전쟁”,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논문, 2002.
황숙희, “한반도의 미군기지”, 「함께 사는 길」 9월호, 2001.

황희연, “국토의 난개발연풍, 그 실태와 대책”, 「환경과생명」 가을호, 2000.

Jonathan Harr, *A Civil Action*, Random House, 1995.

Jerome Facher, *The View from the Bottomless Pit : Truth, Myth, and Irony in A Civil Action*, 23 *Seattle U.L.Rev.*243 .1999.

Kevin E. Mohr, *Legal Ethics and A Civil Action*, 23 *Seattle U. L. Rev.* 283. 1999.

Jan Schlichtmann, "Law and Environment : Reflections on Woburn", 24 *Seton Hall Legis. J.* 265. 2000.

Linda Silvermann/Allan Stein, *Civil Procedure : Theory and Practice*, Aspen, 2001.

Sandra A. Smith, *Polyfurcation and the right to a civil jury trial: Little Grace in the Woburn Case*, 25.*B.C, Env'tl. Aff. L. Rev.* 649. 1998.

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997.

Kakonen/Jyrki, *Green Security dr Militarized Environment*, Dartmouth, 1994.

Romm/Joseph, *Defining National Security - the Nonmilitary Aspect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 1993

<http://www.GreenKorea.org/>

<http://search.naver.com/>

<http://www.me.go.kr/>

[Abstract]

Study on environmental pollution in returned American military bases
regarding its legal aspects

– centered on finding and settling the problems of SOFA environmental provision established
between Korea and America –

Lee, Man Jong

A total of 23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n cities including Maehyangri, a bomb practicing area, came into the hands of Koreans in 2007 by the American troops with no environmental inspection and purification conducted in 2007.

In fact, the amendment of SOFA agreement in 2001 stipulated that American troops should return their bases to Korea after ridding th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if needed. The US military, however, ignored the Korean provision stipulating the environmental purification and took "return of land" procedure based on SOFA's article 4, " no duty of restoring to the original state"

As a result, environmental and citizens' groups demand a retraction of environmentally uninspected and unpurified return of American military bases and that has become Korea's current issue.

Therefore, it is urgent to revise and add to the environment-related articles in SOFA in order to solve their controversial interpret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There is no way to arbitrate and settle if both countries have different views in interpreting and conducting SOFA agreements due to unclear and unspecified articles.

In conclusion, diplomatic effor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urgently required both strategically and legally.

주 제 어 환경오염, 오염제거, 환경파괴, 반환, 미군기지

Key words Environmental pollution, Decontamination, Environmental Disruption, returned,
American military base